

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
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32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5. 28.

2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」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실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 명시(안 제6조)
- 나.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(안 제7조 제2항 제5호 신설)
- 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, 심의 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 현황 작성 조항 추가(안 제7조제3항, 안 제7조제4항 신설)
- 라. 비(非)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8조부터 제11조 신설)

마.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(안 제4조 제1항 제1호, 제5조, 제7조, 제12조부터 제20조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 및 제16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」 제도개선 권고*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,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실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※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*

- 의안명 :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
- 의결일 : 2023. 10. 23.
- 의결 요지(권고 요지)
 - ▶ 공금예금계좌 개설·운영(우리구 현재 운영 중)
 - 통합기금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와 자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금예금 계좌운영
 - ▶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

- 통합기금 재원의 공공성·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무를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명시

▶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

-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조례에 규정
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을 완화(우리구 지적 지자체 미해당)

▶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내실화

- 비(非)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
- 민간전문가 비율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에 반영 (광역 지자체에 해당)

▶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

- (심의내역) 통합기금 심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도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화
- (예치현황)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

○ 본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6조에서는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설치하되,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·관리 하도록 명시함

- ▶ 우리구에서는 2024. 5. 8 기준, 이미 고금리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운용중에 있음

-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, 비기금 심의위원회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별 위원회인 금천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함.
-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운영방법 추가, 심의사항 보충, 심의 내용 관리 의무 명시 등을 규정함.
- 그 밖의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.

○ 주요 내용

- 1)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 명시(안 제6조)
- 2)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(안 제7조 제2항 제5호 신설)
- 3)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의 관리의무를 명시하고,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 현황 작성 조항 추가(안 제7조제3항, 안 제7조제4항 신설)
- 4) 비(非)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8조부터 제11조 신설)

○ 타 자치구 현황

-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中.
- 기금 운용 24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 기금 관련 위원회 운용, 3개 자치구 비(非)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대행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2023.10.23.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91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6. 9.]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진출
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0. 6. 9.]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23. 7. 10.] [대통령령 제33621호, 2023. 7. 7., 타법개정]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0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10.>